

# 산업재산권 등록업무 편람(7)

본 내용은 특허청 등록과에서 발간한 「등록업무 편람 1998」의  
제3장 <등록유형별 등록절차>를 연재하는 것임 <편집자 주>

## 회복등록(특등령21)

### (1) 회복등록의 의의

권리의 실체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당해 등록 원부가 멸실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그 등록원부나 등록을 회복시키는 등록이다.

### (2) 회복등록의 종류

- ① 특허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회복등록
- ②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

### (3) 멸실된 특허(등록)원부의 회복

- ① 회복의 대상 및 특허(등록)원부멸실의 고시 (특등령10)
- 특허청장은 특허(등록)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3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한 자는 그 멸실된 특허(등록)원부에 있어서의 종전의 순위를 가진다는 뜻을 고시하여야 함

### ② 회복등록 신청 (특등령21①)

등록권리자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음

### ③ 특허(등록)원부 작성 (특등령21②)

특허청장은 특허증·특허공보 기타의 관계서류를 조사·확인하여 특허(등록)원부를 작성

### ④ 특허(등록)원부의 등본 송부

특허청장은 특허(등록)원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특허(등록)권자 기타 특허에 관한 권리자에게 각각 송부

### (4) 말소된 등록의 회복등록

#### ① 회복신청

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권리자가 신청

- 말소된 등록에 대항할 수 있는 증거서류
-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또는 그 주문증명등

#### ② 접수

- 접수일부인 날인
- 접수번호부여 및 대장등재등

#### ③ 등록원부 출력

- ④ 방식심사 및 조사·확인
- 신청서의 기재사항 확인

- 신청자의 적격여부 확인
- 신청서와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의 일치여부
- 수수료납부 여부
- 조사·확인
- 회복등록사유에 대한 관련서류 조사·확인
- ⑤ 회복등록 문서기안 및 결재  
    말소 및 회복등록 사유, 관련 증명서류
- ⑥ 전산입력 및 결재안 출력

※ 회복등록방법(특등칙16, 17)

- 소멸전 당해 사항에 회복의 원인, 취지 및 연월일 기재
- 소멸등록된 해당번호란의 음영을 제거하고
- 소멸등록시 기재한 소멸등록취지를 음영으로 말소

- ⑦ 결재안 대사·확인
- ⑧ 결재
- ⑨ 폐쇄원부정리
- ⑩ 등록필 통지(특등칙52)

## 심판사항 등록

### (1) 의의

특허심판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최종처분에 흠이 있는 경우, 즉 부당한 거절사정·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정쟁송절차다. 등록된 특허권 등에 이와 같은 쟁송이 있는 경우 쟁송결과에 따라 존립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런 사항이 특허(등록)원부에 등록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려는 제도임.

### (2) 심판관련 등록사항

#### ① 예고등록

- 심판의 청구 : 무효심판(특133), 존속기간의

연장등록 무효심판(특134), 정정심판(특136), 정정무효심판(특137), 권리범위확인심판(특135), 통상실시권허여심판(특138), 이의결정취소불복심판(특132의3)

※ 거절사정불복심판등 심사의 당부(當否)를 가리는 사정계(査定系)심판은 등록전에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등록대상이 아님

- 재심의 청구(특178)
- 특허법원에의 소(특186①)
- 대법원에의 상소(특186⑦)
- ② 심결확정등록 : 심판의 확정심결, 재심의 확정심결, 특허법원의 확정판결, 대법원의 판결
- ③ 취하등록 : 예고등록된 심판 등의 취하

### (3) 등록시기

#### ① 예고등록 (특등령3,23)

심판·재심의 청구나 특허법원에의 소 또는 대법원에의 상고가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을 때

#### ② 확정등록 (특등령14)

심판·재심의 확정심결이나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을 때

#### ③ 취하등록

예고등록된 심판청구·재심청구·소의 제기 또는 상고에 대한 취하가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을 때

#### ④ 예고등록의 말소 (특등령49)

심판청구·재심청구·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아래에 해당될 때 특허청장은 직권으로 예고등록을 말소(특허심판원장의 통지 필요)

- 심판청구·재심청구·소의 제기 또는 상고를 각각한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

- 심판청구·재심청구·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이유없다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

## (특허심판의 심결구조 및 등록사항)

구분	1 심	2 심	3 심
심판·소송종류	무효심판, 권리법위확인심판 등	심결취소소송	상고
심결기관	특허심판원	특허법원	대법원
청구기한		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	판결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
등록사항	<b>불복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무효심판예고등록</li> <li>• 취소심판예고등록</li> <li>• 권리법위확인심판예고등록 등</li> </ul> <b>확정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심결(초심) 확정등록</li> <li>* 예고등록 말소</li> </ul> <b>취하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취하등록(초심)</li> <li>* 예고등록 말소</li> </ul> <b>재심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재심예고등록</li> <li>• 재심확정등록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심결취소소송예고등록</li> <li>* 1심의 예고등록 말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상고예고등록</li> <li>* 2심의 예고등록 말소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확정(상고)등록</li> <li>* 예고등록 말소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취하등록(상고)</li> <li>* 예고등록 말소</li> </ul>

- 심판청구·재심청구·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취하가 있는 경우
- 심판청구·재심청구·소의 상급심에 대한 예고등록이 있는 경우

## (4) 등록절차

## ① 접수

- 심판원에서 심판 등이 청구되거나 취하될 때, 심결이 확정될 때에는 통지서를 등록과로 송부
- 문서를 수령한 후 접수부에 기재하고 접수번호 부여

## ② 등록원부 출력

## ③ 등록사항 확인

- 등록원부상의 해당심판번호, 사건번호 등을 확인 후 서류에 흡결이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때 심판원에 전화로 확인

- 당해사건과 관련하여 말소할 사항(예고등록 및 권리 등) 확인

- 무효심결확정전의 경우 특허(등록)료의 반환대상 확인

-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의 특허료는 반환(특84)

## ④ 전산입력 및 결재안 출력

- 등록원부의 권리란에 순위번호, 접수일자, 접수번호, 심판일자(청구일자), 심판번호, 사건의 표시, 청구인, 주말번호, 심결요지등을 입력
- 등록결재안을 출력하고 통지서와 대조확인 후 담당자가 날인

## ⑤ 환급통보서 및 과오납통보서 작성

- 무효심결확정으로 반환할 특허(등록)료가 있는 경우 환급통지서(권리자용) 및 과오납통지서(총무과 경리담당용)를 작성

## ⑥ 결재

## ⑦ 등록원부 등재 정리 및 통지서 송부

- 등록원부 등재하고, 심판소 송부문서와 등록결재서류를 함께 편철 보관

## ○ 환급통지서 및 과오납통지서 송부

- \* 심판사항 등록은 그 등록결과를 심판원에 통지하지 않음(심판원에서는 전용단말기를 통해 등록사항의 조회 가능)

## (이의신청개요)

대상	공고방법	이의신청기간	비고
의장	특허·실용 신안	등록후 등록공고	공고후 3월이내 (특69, 실15)
	심사	등록후 등록공고	이의신청제도없음
	무심사	등록후 등록공고	공고후 3월이내 (의29의2)
상표	등록전 출원공고	공고후 30일이내 (상25)	

**이의신청사항 등록****(1) 이의신청의 의의**

이의신청이라 함은 출원공고 또는 등록공고한 특허·실용신안·의장·상표에 대하여 그 출원이 등록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월이내에 그 출원을 다시 심사하여 그 권리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. 이 제도는 심사단계에서의 심사불비를 지적하고 나아가 심사의 공정과 정확성을 확보함은 물론 흔히는 등록을 방지하고 이미 등록된 특허권등은 취소함으로써 분쟁을 최소화하고, 특허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.

**(2) 이의신청자 또는 기간**

- 이의신청자 : 누구나
- 이의신청기간
  - 등록공고일로부터 3월이내(특허·실용신안·의장무심사등록)
  - 출원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(상표)
- \* 이의신청기간은 법정기간으로 기간연장등이 허용되지 않는다.
- 이의신청대상
  - 특허·실용신안이의신청 : 청구항마다 이의신

**청 가능**

-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 : 다의장등록출원된 의장등록에 대하여 각 의장마다 이의신청가능

**(3) 이의신청서 기재사항**

(특69②, 실15, 의29의2② 상25)

- ① 이의신청인 및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(법인인 경우 명칭등)
- ②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표시(특허(등록)번호 등)
- ③ 이의신청의 취지
- ④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

**(4) 이의신청서의 접수**

- ① 이의신청 접수대장에 기록(접수번호·이의신청인 등 기록)
- ② 이의신청번호 부여 및 이의신청포대 작성
- ③ 전산입력 및 발송대장 출력
- ④ 해당심사국으로 이의신청포대 및 등록포대 이송(출원규정10)

**(5) 이의신청에 따른 중간서류의 접수**

- ① 이의신청 중간서류접수대장에 기록(접수번호·이의신청인 등 기록)
- ② 전산입력 및 발송대장 출력

③ 해당심사국으로 이송(출원규정 제11조)

▣ 해당심사국 업무

- 심사관 합의체 및 심사장 지정
- 이의신청번호와 합의체의 명의를 이의신청인 및 권리자에게 통지
- 예고등록의뢰서를 등록과장에게 통지 (이의신청일, 이의신청번호, 등록번호 신청의 취지등을 기재-심사규정 28)
- 이의결정 후 확정일자 및 이의결정서의 결론이 기재된 확정등록 의뢰서를 등록과장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포대와 등록포대를 등록과로 이송 (심사규정 36)

(6) 예고등록과 확정등록 (특등령1,3, 실등령1,4, 의등령1,3)

① 예고등록 및 확정등록의뢰서 접수

- 등록대상 “특허이의신청, 실용신안이의신청,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 (\*의장심사등록은 이의신청제도 없고 상표이의신청은 등록전에 있으므로 등록대상이 아님)

② 전산입력 및 결재안 출력

③ 결재 후 update

(7) 이의신청의 취하(특76, 실15, 의30②)

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등본의 송달 전까지는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. 이때 2이상의 청구항에 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는 청구항마다 이를 취하할 수 있으며, 다의장등록출원에 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는 각 의장마다 이를 취하할 수 있다. 취하가 있는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.

**직권 경정등록(특등령37)**

-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그 착오 또는 누락이 특허청 직원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없이 그 등록을 개정하고 그 뜻을 당해 착오 또는 누락의 사실이 있는 등록의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
- 당해 착오 또는 누락에 기하여 등록된 사실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거나 의무를 면하거나 지위의 변동이 있는 등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연락하여 상호간의 이해를 조절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모함으로써 분쟁등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.

\* 착오 또는 누락이 경미한 경우 전산자료 수정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입하고 전산 수정한 후 결재 처리하고 있음

**등록료 납부기간 연장(상표·서비스표)**

(1) 등록료납부기간 연장

상표권의 설정·지정상품의 추가·존속기간갱신은 등록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며, 위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사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그러나 그 납부기간은 신청인의 청구에 의하여 30일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(상35)

(2) 처리절차

① 신청서 접수(신규, 갱신, 지정상품 추가등록)

접수대장에 기록(접수인 날인, 접수번호 부여)

② 사정포대 인출

③ 등록방식심사(검토사항)

○기간 : 등록사정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2월이내

○수수료

※ 보정, 불수리, 과오납결정 및 통지

④ 연장승인문서 · 기안

⑤ 결재

⑥ 승인문서 발송

⑦ 포대보관

-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특허(등록)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
- 수년분 또는 모든 연차분의 일괄납부 가능

#### ④ 납부기간 계산 예

- 설정등록일 : 1997. 1. 10
- 4년분 연차료 정상납부기한 : 2000. 1. 10  
(당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)까지
- 4년분 연차료 추가납부기한 : 2000. 7. 10 (당일이 공휴일이면 다음날)까지, 2000. 1. 100  
공휴일일 경우에도 별반

## 연차료 납부(특·실·의)

### (1) 연차료납부

설정등록된 특허권 · 실용신안권 · 의장권은 그 권리를 존속시키고자 하는 경우 권리존속기간중에는 매년분의 특허(등록)료를 당해 권리의 설정등록일(다만, 출원공고된 특허권 · 실용신안권은 출원공고일)을 기준으로 그 전년도에 선납하여야 함

### (2) 처리절차

① 등록료 납부서 접수 → 접수대장에 기록(접수인 날인, 접수번호 부여)

② 등록원부 출력

③ 등록방식심사(등록여부 검토사항)

○ 등록사항 일치여부확인

• 등록번호, 권리자, 기납부한 연차료납부사항 등

○ 등록료 납부기간내 납부여부(징수규칙7⑦)

• 당해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년도에 납부

(다만, 출원공고된 권리의 경우는 출원공고일 기준)

※ 보정지시, 과오납 · 불수리결정 및 통지

④ 전산입력 및 결재안 출력

⑤ 결재안 확인 · 대사

⑥ 결재

⑦ 등록관계서류 정리 및 보관

※ 등록료의 부족으로 인한 등록료납부서의 불수리와 그 보정

○ 등록료를 부족하게 납부하여 등록료납부서가 수리되지 않아 권리가 소멸할 위기에 놓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.

○ 이러한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은행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과 최초의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등록료납부서를 작성하고 접수시키면 최초 납부일을 인정하여 등록가능함

○ 이것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 문제와 흡사하여 출원인의 내심의 효과 의사와 표시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등록료를 납부했다는 사실을 권리설정의 의사로 보아 그것을 존중해주는 의사주의의 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,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한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.

발특9903